



유형

공공연구기관

ID

2024년도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통계법」 제18조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공계인력 기관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을 채용·활용하고 있는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출연(연) 및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기타 비영리법인 연구기관(박물관, 학회 제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고용, 채용, 처우 등 활용 실태를 파악하여 **과학기술 분야 연구인력의 육성·활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조사에서 수집된 결과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귀사의 응답이 정부의 정책 수립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8월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

(주)메트릭스

전담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회신처

이현진 차장
(☎) 02-2017-1807 (F) 02-6919-2642
(E-mail) kistep@metrix.co.kr

※ 기관 일반현황

- 직원 수는 일반 사무행정직 및 단순기능직(운전, 시설보수, 전산) 등까지 포함하여 작성하며, 분소나 지소, 센터 등 하위 조직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속 상시근로자를 합산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주요 연구개발 분야는 여러 가지가 해당될 경우, 해당 기관의 주요 분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연구개발비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과제(시험생산 및 상업화 단계의 과제는 제외)에 소요된 비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다년도 사업이 포함된 경우, 1년 단위로 연구비를 계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설립유형

① 국립연구기관

② 공립연구기관

③ 공공기관 연구기관

④ 정부출연연구기관

⑤ 지방자치단체출연(연)

⑥ 기타 비영리기관 (연구조합, 협회 등)

주요 연구개발분야

① 이학

② 공학

③ 의·약·보건학

④ 농업과학

⑤ 인문학

⑥ 사회과학

소재지

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주소

시/군/구

상세주소

직원 수

명 연구개발비

백만원

[안내] 본 조사에 응답하시기 전, 아래 설명을 읽고 조사에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 대상 및 조사 범위

- ① 본 조사의 대상은 “이공계열 분야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출연(연) 및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기타 비영리법인 연구기관(박물관, 학회 제외)”입니다.
- ② 응답은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잘 파악하고 계신 귀 기관 내 인력 운용 담당 책임자”께서 해 주십시오.
각 응답을 부처(서)별로 나누어 응답이 필요한 경우, 총괄자께서 조사된 내용을 취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③ 본 조사의 응답 단위는 기관 내에 존재하는 분소나 지소, 센터 등의 하위 조직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단일 연구기관만 존재하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을 기준으로, 분소나 지소, 센터 등 하위 조직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한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④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설문지의 응답 기준 시점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연구개발비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기준입니다.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의 정의

본 조사는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조사로, 다음 연구개발인력 및 이공계 전공자에 대한 정의를 포괄합니다.

① 연구개발인력 : 직접적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한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합한 총 인력규모

연구원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학위 이상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사람
연구 보조원	- 연구지원·기능인력 : 연구원은 아니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용 기자재의 운용, 도면의 작성, 가공·조립, 실험·검사·측정 등의 연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연구개발 보조자 - 연구행정 및 기타지원인력 : 연구원은 아니나 연구개발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연구행정, 연구회계, 연구지원 사무 등을 포함한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이공계 전공자

본 조사에서 이공계는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졸업자를 의미하며, 한국교육개발원(KEDI) 전공 분류를 따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자연계열	농림·수산	농업학, 수산학, 산림·원예학
	생물·화학·환경	생명과학, 생물학, 동물·수의학, 자원학, 화학, 환경학
	생활과학	가정관리학, 식품영양학, 의류·의상학, 교양생활과학
	수학·물리·천문·지리	수학, 통계학, 물리·과학, 천문·기상학, 지구·지리학, 교양자연과학
공학계열	건축	건축·설비공학, 건축학, 조경학
	토목·도시	토목공학, 도시공학
	교통·운송	지상교통공학, 항공학, 해양공학
	기계·금속	기계공학, 금속공학, 자동차공학
	전기·전자	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학
	정밀·에너지	광학공학, 에너지공학
	소재·재료	반도체·세라믹공학, 섬유공학, 신소재공학, 재료공학
	컴퓨터·통신	전산학·컴퓨터공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산업	산업공학
	화학	화학공학
	기타	기전공학, 응용공학, 교양공학
	의료	의학, 치의학, 한의학
의약계열	간호	간호학
	약학	약학
	치료·보건	보건학, 재활학, 의료공학

다음은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의 고용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 기관의 전체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인원 수를 작성해 주십시오.

* 작성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Q1. 귀 기관에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임원 수 포함, 학생연구원 제외)은 모두 몇 명입니까?

[용어설명]

- 현재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2024년 12월 31일 기준, 정규직과 임시계약직,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한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 정규직 및 임시계약직에 대한 정의는 설문지 뒷면의 [주요 용어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외국인: 국내·외 학위에 관계없이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 국적자

구 분	내국인(A)	외국인(B)	합계(A+B)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명	명	명

귀 기관의 성별, 연령별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인원 수를 작성해 주십시오.

* 작성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Q2. 성별, 연령별 전체(내국인+외국인)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수(임원 수 포함, 학생연구원 제외)

- 정규직 및 임시계약직에 대한 정의는 설문지 뒷면의 [주요 용어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구 분	정규직		임시계약직		합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 30대 미만	명	명	명	명	명
(2) 30대	명	명	명	명	명
(3) 40대	명	명	명	명	명
(4) 50대	명	명	명	명	명
(5) 60대 이상	명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명

(부가조사 1)

Q2-1. (Q1 외국인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1명 이상 보유 기관)

성별, 연령별 외국인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수(임원 수 포함, 학생연구원 제외)

구 분	정규직		임시계약직		합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 30대 미만	명	명	명	명	명
(2) 30대	명	명	명	명	명
(3) 40대	명	명	명	명	명
(4) 50대	명	명	명	명	명
(5) 60대 이상	명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명

귀 기관의 계열별, 학력별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인원 수를 작성해 주십시오.

* 작성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 본 조사는 최종학위 기준입니다. 현재 학위과정생 및 수료생도 최종학위 취득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예) 박사과정생, 박사수료생 → 석사학위 인력 수에 포함

Q3. 계열별, 학력별 전체(내국인+외국인)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수(임원 수 포함, 학생연구원 제외)

○ 정규직 및 임시계약직에 대한 정의는 설문지 뒷면의 [주요 용어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구 분	정규직			임시계약직			합계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1) 박사	명	명	명	명	명	명	명
(2) 석사	명	명	명	명	명	명	명
(3) 학사	명	명	명	명	명	명	명
(4) 전문학사	명	명	명	명	명	명	명
(5) 고졸 이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부가조사 2)

Q3-1. (Q1 외국인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1명 이상 보유 기관)

계열별, 학력별 외국인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수(임원 수 포함, 학생연구원 제외)

구 분	정규직			임시계약직			합계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1) 박사	명	명	명	명	명	명	명
(2) 석사	명	명	명	명	명	명	명
(3) 학사	명	명	명	명	명	명	명
(4) 전문학사	명	명	명	명	명	명	명
(5) 고졸 이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귀 기관의 계열별, 직급별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인원 수를 작성해 주십시오.

* 작성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 직급은 기업 내 자체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단, 직급기준이 없거나 분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직급기준표를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원급 이하 : 원급 이하는 아래의 인력을 모두 포괄함

- 해당 분야에서 1년 미만의 경력을 쌓은 직원(신입직/사원 등)으로, 기업에서 외부인력을 영입할 때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자
- 해당 분야에서 초기관리자급(대리/주임 등)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기업에서 외부인력을 영입 시 이에 수반하는 경력을 인정받은 자

② 선임급 : 해당 분야에서 중간관리자급(차장/과장 등)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기업에서 외부인력을 영입 시 이에 수반하는 경력을 인정받은 자

③ 책임급 : 책임자급의 직무를 다하는 직원으로, 학과장/학부장, 부속기관/시설의 장, 대학(원)장, 실/처장, 수석연구원/책임연구원 이상, 상급관리자(실/부장급)에 해당하는 자

④ 임원급 : 해당 분야에서 임원급(대표/전무/상무/이사)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기업에서 외부인력을 영입 시 이에 수반하는 경력을 인정받은 자

Q4. 계열별, 직급별 전체(내국인+외국인)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수(임원 수 포함, 학생연구원 제외)

○ 정규직 및 임시계약직에 대한 정의는 설문지 뒷면의 [주요 용어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구 분	정규직			임시계약직			합계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1) 원급 이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2) 선임급	명	명	명	명	명	명	명
(3) 책임급	명	명	명	명	명	명	명
(4) 임원급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부가조사 3)

Q4-1. (Q1 외국인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1명 이상 보유 기관)

계열별, 직급별 **외국인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수**(임원 수 포함, 학생연구원 제외)

구 분	정규직			임시계약직			합계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1) 원급 이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2) 선임급	명	명	명	명	명	명	명
(3) 책임급	명	명	명	명	명	명	명
(4) 임원급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귀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이공계 박사후연구원(Post-doc) 인원 수를 작성해 주십시오 * 작성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용어설명]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Post-doc)의 정의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응답자는 자신이 속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박사후연구원(Post-doc) 정의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동 조사의 박사후연구원 정의를 활용**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Post-doc):**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고용된 임시계약직 연구개발인력으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의 연수·훈련을 위하여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 참고)

(부가조사 4)

Q5. (임시계약직 이공계 박사 연구개발인력 1명 이상 보유 기관)

성별 및 계열별 **전체(내국인+외국인)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임시계약직 중 위촉연구원, 초빙연구원, RA(Research Assistant) 등을 제외한 박사후연구원 수)

구 분	성별		계열별			합계
	남성	여성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내국인(A)	명	명	명	명	명	명
외국인(B)	명	명	명	명	명	명
합계(A+B)	명	명	명	명	명	명

다음은 임시계약직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의 고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Q6. (임시계약직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1명 이상 보유 기관)

귀 기관에서 임시계약직(임원, 학생연구원 제외) 연구개발인력을 고용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임시계약직에 대한 정의는 설문지 뒷면의 [주요 용어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임시계약직을 활용하려는 업무가 계절적·한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 ② 임시계약직을 활용하려는 업무가 정규직으로 채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단순보조, 물리적 지원 등)
- ③ 업무량의 일시적 증가로 추가인력이 한시적으로 필요해서
- ④ 임시계약직에 대한 물질적 보수(급여 등)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 ⑤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 채용하여 우수인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 ⑥ 기타 ()

II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채용

다음은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 정규직에 대한 정의는 설문지 뒷면의 [주요 용어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Q7. 귀 기관의 2025년도 정규직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채용 예정 인력은 몇 명입니까?

○ 채용 예정 인력은 내국인, 외국인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12월이며, 2025년 1월부터 응답일 기준 이전에 채용된 인력도 포함

○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학위과정생 및 수료생을 채용 예정에 포함하실 경우, 최종학위 취득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예) 박사과정생, 박사수료생 → 석사학위 채용 예정 인력 수에 포함

구 분	합 계
(1) 박사	명
(2) 석사	명
(3) 학사	명
(4) 학사 미만	명
합계	명

구 분	신입직	경력직	경력무관	합 계
(1) 박사	명	명	명	명
(2) 석사	명	명	명	명
합 계	명	명	명	명

(→ 박사 또는 석사 채용 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만 응답)

다음은 정규직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의 처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 정규직에 대한 정의는 설문지 뒷면의 [주요 용어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Q8. 귀 기관의 신입 및 경력 5년차 **정규직**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의 **연평균 급여(세전 기준)**를 학력별로 기입해 주십시오.

- 연평균 급여 : 총 근로소득(각종 세금 공제 전)을 말하며, 기본급, 각종 수당, 각종 상여금 및 성과급을 합한 금액
 * 해당 인력의 현재 고용여부와 무관하게, 2024년 12월 31일 기준 귀 기관의 급여체계를 고려하여 평균적인 (예상) 지급 수준을 기입

구 분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1) 신입 초봉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 경력 5년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Q9. **정규직**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에게 제공되는 기관 내 복지·보상·지원제도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정규직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을 고용하고 있지 않으실 경우, 추후 정규직 채용 시 제공 가능한 사내 복지·보상·지원제도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국내·외 워크숍 및 컨퍼런스, 학술행사 참여 지원
- ② 추가 학위취득 지원(학위취득에 대한 비용 지원 또는 업무시간 인정)
- ③ 안식년(연구연가), 안식월, 단기연수
- ④ 재교육 및 재직자훈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제공
- ⑤ 재교육 및 재직자훈련,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 ⑥ 주거 및 학자금, 육아 등 생활지원
- ⑦ 기타 ()

다음은 임시계약직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의 처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 임시계약직에 대한 정의는 설문지 뒷면의 [주요 용어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Q10. 귀 기관의 임시계약직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의 연평균 급여(세전 기준)를 학력별로 기입해 주십시오.

- 연평균 급여 : 총 근로소득(각종 세금 공제 전)을 말하며, 기본급, 각종 수당, 각종 상여금 및 성과급을 합한 금액
* 해당 인력의 현재 고용여부와 무관하게, 2024년 12월 31일 기준 귀 기관의 급여체계를 고려하여 평균적인(예상) 지급 수준을 기입

구분	박사	석사
연평균	백만원	백만원

(부가조사 5)

Q10-1. (Q5 이공계 박사후연구원(내국인+외국인) 합계가 1명 이상인 경우)

귀 기관의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연평균 급여(세전 기준)를 기입해 주십시오.

[용어설명]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Post-doc)의 정의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응답자는 자신이 속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박사후연구원(Post-doc) 정의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동 조사의 박사후연구원 정의를 활용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Post-doc):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고용된 임시계약직 연구개발인력으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의 연수·훈련을 위하여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 참고)

- 연평균 급여 : 총 근로소득(각종 세금 공제 전)을 말하며, 기본급, 각종 수당, 각종 상여금 및 성과급을 합한 금액
* 해당 인력의 현재 고용여부와 무관하게, 2024년 12월 31일 기준 귀 기관의 급여체계를 고려하여 평균적인(예상) 지급 수준을 기입

박사후연구원 연평균

백만원(* 세전 기준)

Q11. (임시계약직 이공계 연구개발인력(내국인+외국인) 합계가 1명 이상인 경우)
귀 기관의 임시계약직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의 계약기간별 인원 비중을 기입해 주십시오.

○ 계약기간별 비중 = 2024년 12월 31일 기준
※ (해당 계약기간의 임시계약직 연구개발인력 ÷ 전체 임시계약직 연구개발인력) × 100

구 분	1년 미만	1년	1년 초과~2년 미만	2년	2년 초과
인원 비중	%	%	%	%	%

(부가조사 6)
Q11-1. (Q5 이공계 박사후연구원(내국인+외국인) 합계가 1명 이상인 경우)
귀 기관의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계약기간별 인원 비중을 기입해 주십시오.

[용어설명]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Post-doc)의 정의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응답자는 자신이 속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박사후연구원(Post-doc) 정의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동 조사의 박사후연구원 정의를 활용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Post-doc):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고용된 임시계약직 연구개발인력으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의 연수·훈련을 위하여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 참고)

○ 계약기간별 비중 = 2024년 12월 31일 기준
※ (해당 계약기간의 임시계약직 연구개발인력 ÷ 전체 임시계약직 연구개발인력) × 100

구 분	1년 미만	1년	1년 초과~2년 미만	2년	2년 초과
인원 비중	%	%	%	%	%

Q12. 임시계약직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에게 제공되는 기관 내 복지·보상·지원제도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임시계약직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을 고용하고 있지 않으실 경우, 추후 임시계약직 채용 시 제공 가능한 사내 복지·보상·지원제도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국내·외 워크숍 및 컨퍼런스, 학술행사 참여 지원
- ② 추가 학위취득 지원(학위취득에 대한 비용 지원 또는 업무시간 인정)
- ③ 안식년(연구연가), 안식월, 단기연수
- ④ 재교육 및 재직자훈련,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제공
- ⑤ 재교육 및 재직자훈련,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 ⑥ 주거 및 학자금, 육아 등 생활지원
- ⑦ 기타 ()

다음은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의 활용 이슈에 관한 질문입니다.

Q13. 귀 기관에서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확보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구인 과정에서 지원하는 연구인력 풀이 적음
- ②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 기술, 전공 인력 풀이 적음
- ③ 채용 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경력 인력이 적음
- ④ 안정적·장기적으로 근무할 적절한 인력을 찾기 어려움(이직, 퇴사 등)
- ⑤ 성실성, 꾸준함, 협업능력 등 일반적인 태도나 자질에서 적절한 인력을 찾기 어려움
- ⑥ 기타 ()

Q14. 그렇다면,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확보 과정에 발생하는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수요에 비해 해당 전공분야 졸업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 ② 대학 교육이 이론에 편중되는 등 기관에서 하는 업무와 거리가 있음
- ③ 기술변화, 시장환경 변화 등 수요의 빠른 변화
- ④ 임금, 복리후생 등 원하는 인력을 유인할 물질적 보상 수준의 제공이 어려움
- ⑤ 기관의 지리적인 제약(접근성이 떨어짐)
- ⑥ 기관이 속한 업종과 기술의 전망이 불투명함
- ⑦ 기타 ()

Q15.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활용 시, 어려움을 겪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예(→ Q15-1로 이동)

② 아니오(→ Q16으로 이동)

Q15-1. (Q15 '① 예' 응답자)

그렇다면,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활용 시 겪으셨던 주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전공분야에 대한 학문적·기술적인 역량이 부족함
- 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연구개발 또는 기술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함
- ③ 의사소통, 보고서 작성, 협업, 프레젠테이션, 외국어 등 일반적인 업무역량이 부족함
- ④ 인력의 잦은 이탈로 인해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움
- ⑤ 보유 인력의 역량이 노후화되어 새로운 연구·기술 트렌드를 따라가기 어려움
- ⑥ 기타 ()

(부가조사 7)

Q16. 귀 기관에서는 외국인 이공계 연구개발인력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현재 고용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외국인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활용 계획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 Q16-1로 이동)

② 아니오(→ Q16-2로 이동)

(부가조사 8)

Q16-1. (Q16 '① 예' 응답자)

그렇다면, 외국인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적합한 내국인 연구개발인력 충원이 어려움
- ② 인건비 절감
- ③ 첨단분야 외국인 연구개발인력 확보
- ④ 내국인과 비교하여 외국인 연구개발인력의 전문성 및 연구능력이 뛰어남
- ⑤ 외국인 연구개발인력을 통해 국제 협력, 해외진출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⑥ 기타 ()

(부가조사 9)

Q16-2. (Q16 '② 아니오' 응답자)

그렇다면, **외국인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활용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외국인 연구개발인력을 활용할 필요성이 없음
- ② 외국인 연구개발인력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채용경로가 없음
- ③ 외국인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정보 부족
- ④ 우수한 외국인 연구개발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부족
- ⑤ 의사소통으로 인한 직무수행에 제한이 예상
- ⑥ 문화차이로 인해 조직 화합이 어려움
- ⑦ 기타 ()

※ 응답자 정보

본 조사에 응답해 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답례품 발송을 위해 아래의 응답자 정보를 누락 없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명		연락처	직통	
소속/직위			휴대폰	
이메일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요 용어 설명

○ 공공연구기관 설립 유형

- 국립연구기관: 정부부처 산하에 소속되어 설립·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 예산으로 투자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
예) 국립산림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전파연구원 등
- 공립연구기관: 시도지자체 소속의 연구기관으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도지자체에서 투자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
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등
- 공공기관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중 과학기술 분야 연구소가 있는 공사, 준정부, 기타공공기관(정출연 및 특정연구기관 제외)
예)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학석탄공사, 국립생태원 등
-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속한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
예) 강원연구원, 경기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등
- 기타 비영리기관: 정부출연기관이 아닌 법인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연구조합, 협회 등)

○ 공공연구기관 주요 연구개발 분야

- 이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생물학, 지질학 등의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학문
- 공학: 전자, 전기, 기계, 항공, 토목, 컴퓨터 등의 공업을 연구하는 학문
- 의·약·보건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약학, 보건학, 재활학, 의료공학 등을 연구하는 학문
- 농업과학: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산 및 경영 방법 등을 연구하는 학문
- 인문학: 인간과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나 사상, 문화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문
- 사회과학: 인간 사회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 직원 수

- 2024년 12월 31일 기준의 상시근로자 수 기재

일반 사무행정직 및 단순기능직(운전, 시설보수, 전산) 등까지 포함하여 작성하며, 분소나 지소, 부설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인력 모두를 합산하여 작성함

○ 연구개발비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과제(시험생산 및 상업화 단계의 과제는 제외)에 소요된 비용
- 다년도 사업이 포함된 경우, 1년 단위로 연구비를 계산하여 작성

○ 현재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정규직과 임시계약직,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한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 외국인

- 국내·외 학위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 국적자

○ 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연구개발인력

○ 임시계약직

- 정해진 임용기간 계약으로 귀 기관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연구개발인력으로, 박사후연구원, 위촉연구원, 초빙연구원, RA(Research Assistant) 등 다양한 명칭의 인력이 포함될 수 있음
- 학생연구원은 임시계약직에서 제외하여 산정함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고용된 임시계약직 연구개발인력으로, 독창적인 연구 능력 보충 등의 연수·훈련을 위하여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 참고)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Post-doc)의 정의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응답자는 자신이 속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박사후연구원(Post-doc) 정의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동 조사의 박사후연구원 정의를 활용

○ 경력 구분

- 신입직: 해당 분야에서 1년 미만의 경력을 쌓은 직원으로 채용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자
- 경력직: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직원으로 채용시 경력을 인정한 자
- 경력무관: 경력 여부에 상관없이 채용하려는 자